

충청북도순환수립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2
----------	-----

제안이유

- 상위법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삭제와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관직 정비등 조례목적과 일치하도록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관직명칭 개정(산림청장 → 환경부장관)
-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제조항 삭제(제8조, 제11조, 제14조)
- 법개정으로 신고의무기간 완화(3일 → 7일)
- 자구수정(포획승인증 → 포획승인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 종전의 22개 조문을 18개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관련법규

- 조수보호및수립에관한법률 제13조

□ 첨 부

-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충청북도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수렵장의 명칭은 충청북도순환수렵장 (이하“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렵금지 구역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사무소) 도지사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출장소·구청, 읍·면·동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수포획 승인등) ①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시장·군수·증평출장소장의 수렵조수포획(이하“포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렵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②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제7조(수렵금지구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2.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도시공원
4. 문화재보호구역
5.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군사시설 보호구역
7. 도시계획구역
8. 관광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
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구역
10.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조수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8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②포획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서 하는 총렵

제9조(포획조수의 신고) ①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에 포획한 조수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승인일로부터 7일마다 수렵장에서 가까운 시·군·출장소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조수에 조수보호 및수렵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0조(포획승인등의 취소) ①시장·군수·출장소장은 수렵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및 시·군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장 소지자에 대하여 포획승인을 취소한 경우 면허장 발급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 각호의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가능 조수 이외의 조수를 포획하였거

나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렵안내 등) ①시장·군수·출장소장은 주로 외국인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임무·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건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안내료 및 엽건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조수보호원의 배치) 시장·군수·출장소장은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조수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렵자 및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의 설치) ①도지사는 조수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①시장·군수·출장소장이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의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와 시장·군수·출장소장은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출장소장은 제한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출장소장은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업무대행 등) ①도지사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수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조수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조수 포획승인서 교부·회수
2.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조수 확인표시
3. 수렵안내원 관리
4. 기타 도지사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수렵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북도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렵지도 단속등)①시장·군수·출장소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를 지도·단속토록 하여야 하며, 수렵면허장 및 포획승인서 소지 여부와 포획한 조수 및 그 알·집·박제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의한 수렵금지구역내에서의 수렵행위
2. 제8조,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3. 기타 불법행위

②수렵지도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수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및 조수보호및수렵 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 렷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포획장소				
⑤ 조수별포획예정량			⑥ 포획기간	
⑦ 총기의 종류			⑧ 수렵장사용료	원
<p>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 조수를 포획코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p>1. 면허장 사본 1부.</p> <p>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p>				없 음

[별지 제 2 호 서식]

(앞 면)

제 호 수 령 조 수 포 획 승 인 서			
승인연은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승 인 사 항	③포획기간		
	④포획지역	⑤조수별포획예정량	
	⑥수렵면허장번호	⑦총기의 종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			
< 준 수 사 항 >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같이 이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조수별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며 그 포획물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땃·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 미신고시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사유가 됩니다.			

(뒷 면)

포 획 조 수 신 고 내 역							
연월일	조수명	수 량	포획장소 (군·면)	연월일	조수명	수 량	포획장소 (군·면)

관 계 법 령 발 취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제13조(수렵장)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수의 보호·번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 밖에서는 수렵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
- ③수렵장안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조수를 포획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한 조수의 종류, 포획수량등에 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안에 수렵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위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수렵장 사용료등 수입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⑦수렵장안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⑧수렵장설정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을 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